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㈜우리카드

2. 제재조치일 : 2024. 12. 11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개선사항 2건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개선사항

(1) 법인고객의 자동차 리스 취급 시 대출한도 관리 미흡

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」 제15조의2 등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주의 차입목적,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대출을 취급하여 대출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도

내규에는 법인고객에 대한 리스취급시 대출한도에 대하여 잔존가치율 등을 반영한 적정한 기준이 없으며, 회사는 2022. 7. 20. 차주 ㈜A에게 자동차 리스 1건, 91.2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량담보 한도를 차량가격의 100%로 산정하는 등 대출한도를 과도하게 산정하였다.

<조치할 사항>

회사는 법인고객에 대한 자동차 리스 취급 시 대출한도가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고려한 적정한 대출한도 부여 기준을 마련·운영하시기 바랍니다.

(2) 자동차 할부 취급 시 사후관리 미흡

내규에 따르면 자동차 할부를 취급한 영업센터는 할부를 취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가 차량등록을 완료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, 기일 경과 시에는 경과일수에 따라 사유파악 및 진행경과 보고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,

할부 취급 후 차량 등록을 통한 계약자 소유권 이전 여부, 차량 소재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아, 2022. 2. 21. ㈜A에 취급한 자동차 할부 1건, 42.6백만원 관련 해당 물건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담보물 관리가 미흡하였다.

<조치할 사항>

회사는 자동차 할부 취급 후 계약자 소유권 이전 여부, 차량 소재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·운영하시기 바랍니다.